

[서식 예]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정지신청서(근저당권말소청구 판결시까지)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정지신청

신 청 인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귀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20○○.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귀원 $20 \circ \circ$ 다경 $\circ \circ \circ \circ$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귀원 $20 \circ \circ \circ \circ$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채무자)은 20○○. ○. ○.경 신청외 ◎◎◎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 갚을 날짜 20○○. ○.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신청외 ◎◎◎ 앞으로 신청인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2. 그 뒤 신청인은 신청외 ●●●에게 위 채무를 갚을 날짜에 모두 갚았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미처 말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3. 그런데 신청외 ●●●의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외 ●●●의 신청인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20○○. ○○. ○. 채권가압류를 하였다가 다시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받아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20○○. ○○.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귀원 20○○타경○○○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 4.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 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되기 전에 그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이전에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5.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〇〇가단〇〇〇호 근저당권말소 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 멸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행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귀원 20〇〇타 경〇〇〇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귀원 20〇〇가단〇〇〇호 근 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제기증명원	1통
1.	영수증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채권가압류결정문	1통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1통
1.	부동산경매개시결정	1통
1.	매각기일통지	1통

20 ○ ○ . ○ . ○ . 의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ㅇㅇㅇㅇm²
- 2.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 1층 299.66 m²
 - 2층 299.66m²
 - 3층 299.66 m²
 - 4층 299.66 m²
 - 지하층 299.66㎡. 끝.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 법규 민사집행법 제275조, 제46조
비용	·인지액 : 불첩부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47조제3항), 다만,
및 기간	특별항고만 허용될 것임(대법원 1985. 5. 31.자 85그44 결정).
기 타	· ①당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②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관결의 정본, ③당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관결의 정본, ④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나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프는 피담보채권을 변제 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⑤당보권 실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함 (민사결행법 채266조 제1항). · 임의경매(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철자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항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항법 제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5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항법 제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음(대법원 1993. 1. 20.차 92.→35 결정).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바, 근저당권실정자가 근저당권설정제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 ·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양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위한 역하고 적절하게 하건하고 보증 및 경이으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4. 11. 선교 2000다5640 판결).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0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정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연행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정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연행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경매감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연행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경매가 감근의 고 당권의 환명로 그 말소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 전의 부러를리 모르하고 그 막장 기안되면 사업된 의상, 그 근도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 관심은 기상하고 같은 법 제5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6조인 소멸하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 전원 부러하지 않는 그 근도를 제기하고 당의 기안되었으면 본적으로 기관하게 되므로, 그 말소 등기가 경료되게 되는 그 모든 기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부 기관하고 당면 기관되었으면 그 된다면 보건되었으면 된다면 그 무등 것이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 등기가 경료됐다면 그 무등 것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 등기의 함께 기관을 가압류에 기관을 가입 취임으로 보건되었으면 그 전략적으로 기안되었으면 그 전략적으로 기관하게 함께 기관을 가입하지 기관을 기관을 기관하지 기관을 기관하고 있다면 기관을 기관하고 기관을 기관하고 기관을 기관하고 기관을 기관하고 기관을 기관하고 기관을 기관을 기관하고 기관을 기관하고 기관을 기관하고 기